

제 호

비축 의약품의 유효기간 연장 결과통지서

신청기관명			
연장대상 비축의약품명			
제조번호	수량	연장 전 유효기간	연장 유효기간
비고			

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102조의8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효기간 연장 결과를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직인